

대전지방법원 2021. 1. 19 선고 2020가단130794 판결 [사해행위취소.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대전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, 이효상

피고1. A

2.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1. 1. 19.

주 문

1. 피고 A는 원고에게 34,797,183원과 그중 34,341,130원에 대하여 2020. 6. 3.부터 2020. 9. 29.까지는 연 1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2020. 1. 9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 B은 피고 A에게 청주지방법원 2020. 1. 21. 접수 제108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오명희

별지